| 서평 |

혁명과 예술과 축구 그리고 노동

손영우, 『사회적 대화 :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 이매진, 2018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2005년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학박사
– 2011–2012년 프랑스 낭트고등과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재직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프랑스가 혁명과 예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축구도 잘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어떤 기자는 축구가 정치보다 프랑스를 더 잘 대표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분야에서는 프랑스는 아직도 한국인에게는 낯선 나라이다. 특히 노동과 복지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노동 하면 독일이고 복지 하면 스웨덴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다. 프랑스는 노동보다는 휴가 쪽에 더 친숙하고, 복지보다는 파업 쪽에 더 친숙한 나라인 것 같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을 끌고 가는 양대 축이며, 국제 노동 규범의 설정에 있어서는 독일이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노동은 그런 프랑스에서 주변이나 대상이 아니라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로 인정받는다. 프랑스의 노동은 어떻게 그런 지위를 가지게 되었을까? 노동이 여전히 경제의 대상에 머물러 있고, 사회 운영에서 배제되어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프랑스의 사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손영우의 책, 『사회적 대화 :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됐나』(이매진, 2018)는 이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책 가운데 하나이다. 손영우는 프랑스 노동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면서 이 질문을 탐색한다.

프랑스는 노동조합은 분열되어 있고, 조직률은 낮으며, 파업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사회적 대화 같은 문화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손영우는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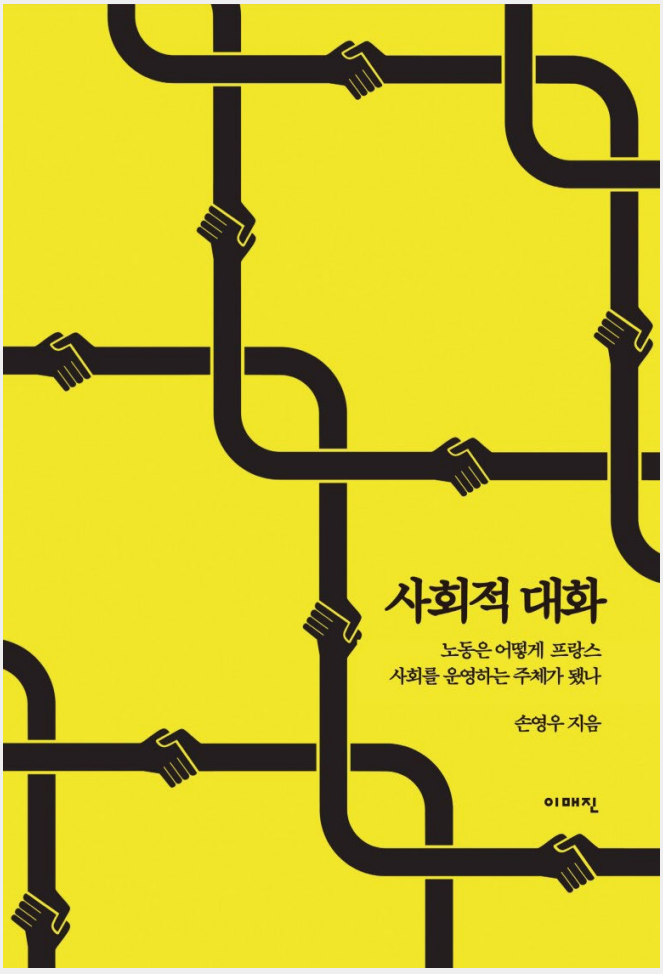

사실 어느 나라나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재의 제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가들은 구체제의 동업조합을 금지시켰다. 신흥 자산가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노동하는 자들의 결사는 존재했다. 국가는 처음에는 금지하다가 나중에는 용인했으며, 결국에는 합법화했다.

흥미로운 것은 파업권이 먼저 합법화된 이후에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까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노동하는 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파업권이 보장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한 결실인 단체협약을 노동조합 가입과 무관하게 노동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제도를 낳았다. 프랑스가 10 퍼센트도 안 되는 노동조합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90 퍼센트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장은 달라도 단체협약은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은 동일하다. 프랑스가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적은 것은 단체협약 덕분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에서 우리는 프랑스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다. 1789년 혁명으로 금지했던 동업조합과 지금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노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들이 '동업을 뛰어넘어 결사'한다는 데 있다."(76쪽) 이 구절은 의미심장하다. 이 구절이야말로 이 책이 던지는 질문, "노동은 어떻게 프랑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이 사회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노동관계의 입법 형성 과정에 노동이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제도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공화주의 전통에 따르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는 일이고, 노동과 경영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법률을 만든다는 개념, 즉 입법교섭은 확실히 1990년대부터 시작된 새로운 현상이며, 그것은 미래의 사회적 대화를 정초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프랑스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조합과 경영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노동이사제를 확대하고, 노사정 영수회담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생태 위기의 심화, 지구화가 초래한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맞서 세대와 세대의 연속을 보장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과 제도는 우리에게 너무 멀어 보일 수도 있다. 혹자는 프랑스를 의심한다.

모두에게 협약을 적용하면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는가, 노동조합이 약해지면 어떻게 노동이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혹자는 프랑스를 비난한다. 아무나 파업하고, 휴가는 왜 그렇게 길고, 노동시간은 왜 또 그렇게 짧은가, 그러면 일은 언제 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점에서 프랑스와 정반대에 있는 한국보다 프랑스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이다. 이 역설(?)이 궁금한 모든 사람에게 일독을 권한다.